

3. 평생회비기금 관리규정

제정: 2004년 5월 20일
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규정 제 3호

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 평생회비를 관리,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다.

2조 (명칭) 이 기금은 명칭은 평생회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고 한다.

3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
- ① 이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상임이사가 겸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한다.
-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이사로 하고, 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4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,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.

5조 (회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가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6조 (기금의 사용)

- ① 기금은 전국규모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등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전한다.
- ② 기금의 발생된 수익금만을 활용할 수 있다.
- ③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려면, 정기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2/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7조 (수익금)

- 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학회운영비로 쓴다.
- ② 운영비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.

8조 (기금관리장부) 위원회는 기금관리장부를 비치 작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.